

예 산 총 칙

2018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81,625,496	32,448,765
일반회계		866,515,279	25,995,458
특별회계		215,110,217	6,453,307
기타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15,110,217	6,453,30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62,000	7,86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82,435,400	2,473,062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2,030,000	360,900
	수질개선 특별회계	70,474	2,114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789,000	23,67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796,637	23,899
	주차장 특별회계	2,666,706	80,001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68,000	2,040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15,992,000	3,479,76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6,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해대책 및 복구비